

# 노동조합 기초교육

KT 새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자 권리 가이드

공공운수노조 KT 지부 (KT 새노조)

# 목차 (Table of Contents)

---

**0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체계

**03**

노동법과 노동 3 권

**04**

부당노동행위

**05**

KT 새노조 소개와 활동

**06**

공공운수노조 소개

**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08**

1 노조 탈퇴 · 구조조정  
합의

**09**

조합원 기본 행동강령

# 01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정의 · 필요성 · 역할

# 01 노동조합이란 ?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 2 조

## ① 평등한 공동체

학력·나이·성별·직종 무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1인 1  
표 원칙으로 동등하게 의사결정 참여

## ② 단결된 힘

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  
집단으로 뭉쳐야 대등한 관계 형성 가능.  
산별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

## ③ 사회적 목소리

8 시간 노동·주 5 일제·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만들어 낸 성과

# 02

##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체계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가

## 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운영체계

### 운영원칙

자주성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
민주성	조합원 참여 보장, 투명한 토론과 1인 1표 결정
투쟁	탄압에 맞서 권리 쟁취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
연대	다른 노동자·시민과 연대하여 사회를 바꿔나감

### 운영체계

#### 의결기구

총회 (최고 의결기구) → 대의원회  
규약 제·개정, 예산·결산, 임원 선출 등 결정

#### 집행기구

집행위원회 + 각 부서·위원회  
총회·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실제 사업으로 집행

#### 감사기구

회계감사위원회 (집행부로부터 독립)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견제 장치

# 03

## 노동법과 노동 3 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 03 노동 3 권 — 헌법 제 33 조

헌법 제 33 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①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

산별노조 ( 공공운수노조 ) 에 직접 가입도 가능

## ②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합의 내용 = 단체협약 (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 )

## ③ 단체행동권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파업 · 태업 · 피켓팅 · 집회 등이 포함됨

노조법이 정한 절차 준수 시 정당한 권리 행사

# 03 노동법의 종류

'노동법'이라는 단일한 법은 없다 — 노동 관련 여러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

## 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휴가·해고 등 최소 기준
- **최저임금법**  
임금의 최저 수준 법으로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3 권 행사 절차를 정한 법

## 건강·안전을 지키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한 작업환경 의무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치료비·생활비 보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내 신설 (2019)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

- **남녀고용평등법**  
성별·임신·출산 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나이 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 의무·재활 지원
- **기간제·단시간 /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 차별 처우 금지

# 04

## 부당노동행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 법으로 금지된 사용자의 행위

## 04 부당노동행위 4 가지 유형

### 불이익 취급

- ×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한직 발령·승진 배제 등 불이익 처우

### 반조합계약

- × 노조 가입·활동 권리를 계약으로 막거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거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 지배·개입

- × 노조 운영에 개입·간섭하거나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 81 조에 명시된 명백한 위법 행위 — 노동 3 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04 부당노동행위 주요 사례

" 이런 것도 부당노동행위?" —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명백한 위법 사례

## × 불이익 취급

노조 활동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 업무 태도 불량 " 을 이유로 경고 · 징계 → 다른 명목을 내세워도 실질이 노조 활동 보복이면 위법

## × 차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직 발령 · 승진 배제 · 상여금 차별 · 계약 미갱신 → 똑같이 일해도 조합원이라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

## × 신고 보복

노동위원회에 신고 · 증언한 직원이 속한 부서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범위를 넓혔다고 면책되지 않음

## × 교섭 거부

" 경영이 어렵다 " 며 몇 달째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음 → 경영 위기는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 교섭 해태

교섭에서 합의해 놓고 " 법무팀 검토 " 를 핑계로 단체협약 서명을 장기 지연 → 협약 체결 회피도 교섭 해태

## × 지배 · 개입

관리자가 조합원을 개별 면담해 " 노조 나가는 게 장래에 좋다 " 며 탈퇴 종용 / 어용노조는 지원하고 독립노조는 탄압

# 04 부당노동행위 , 이렇게 대응합니다

1

## 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는 개인이 아닌 노조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 혼자 끄꿍 앓지 말고 먼저 노동조합에 연락하자 .

2

## 사측 연락 시 즉답 · 서명 보류

면담 요청 · 징계 통보 · 인사 조치 연락이 오면 즉시 조합에 알리고 , " 노동조합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 " 고 유보한다 .

3

## 증거를 확보하라

대화 · 면담 · 지시 상황은 본인이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 가능 . 문자 · 이메일 · 메신저 기록 보관 , 직후 메모 .

4

## 법률적 대응 — 전문가 지원

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나만의 문제 " 로 두지 않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게 , 더 당당하게 .*

# 05

## KT 새노조 소개와 활동

2011년 설립 — 인간다운 KT 를 만드는 사람들

# 05 KT 새노조는 어떤 노조인가

설립	2011년 — 복수노조 제도 도입 후 출범
성격	KT 복수노조 ( 제 2 노조 ), 독립 민주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지향	인간다운 KT · 정보통신의 사회적 책임 노동친화기업 가치 추구
공식 홈	humankt.org

## 설립 배경

기존 1 노조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과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하여 출범.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설립 동력.

## 주요 활동 영역

- 경영진 비리 · 낙하산 인사 감시 및 고발
- 구조조정 피해 노동자 권익 보호
- KT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요구
- 연대기관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연대 활동

# 05 KT 새노조 주요 활동 (2011~2026)

설립부터 지금까지 — 경영진 부정과 구조조정에 맞선 감시·고발의 기록

2011

**창립 · 인력퇴출프로그램 (CP) 폭로**

반인권적 강제퇴출 프로그램 실상을 양심선언으로 폭로

2013~14

**이석채 회장 비리 · 채용비리 비판**

낙하산 · 채용비리 문제 제기 (이석채 유죄)

2018~19

**아현화재 · 황창규 비자금 폭로 · 고발**

상품권깡 비자금 · 쪼개기 후원, 어용노조 의혹 제기

2025

**직원 연쇄 사망 진상규명 요구**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대표 특검 고발

2012

**이해관 위원장 부당해고 맞선 투쟁**

공익제보자 탄압에 맞서 부당해고 다툼

2014

**황창규 8,300명 구조조정 비판**

대규모 명예퇴직 구조조정의 부당성 지적

2024

**김영섭 대규모 구조조정 반대**

네트워크 인력 자회사 전출 구조조정 반대 투쟁

2026

**해킹 · 이사회 비리 폭로, 지배구조 개혁**

이사회 총사퇴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 06

## 공공운수노조 소개

21 만 조합원 —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

# 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공공운수노조 )

2011년 6월 24일 창립 | 민주노총 산하 | 조합원 21만명 |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

## 조직 체계

민주노총 (ITUC 회원 — 163개국 2억 7백만명)  
↓  
공공운수노조 (산별노조)  
↓  
본부 / 지부 / 지회  
↓  
KT 새노조 (KT 지부)

## 가입 대상

공공 · 운수 ·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 해고자 · 퇴직자 모두 가입 가능

## 핵심 지향

노동기본권 쟁취 |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 차별 없는 사회  
정규직 · 비정규직 함께하는 강한 산별노조

# 07

##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축, 어떻게 다른가?

# 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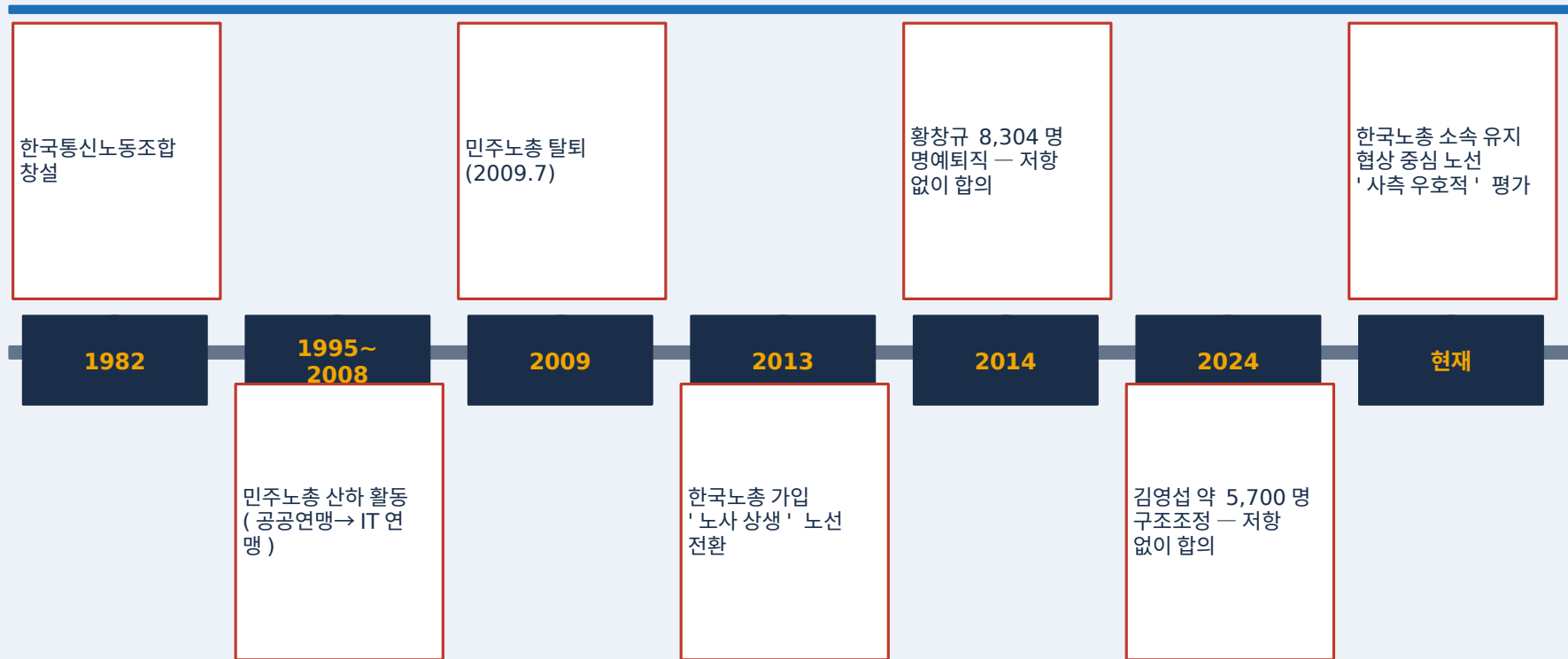
	민주노총	한국노총
설립	1995년 11월 11일	1961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계승)
노선	계급투쟁 —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 추구	온건 개량주의 — 정부·기업과 협력적 관계 중시
정치성향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 사회 변혁 지향	정치적 중립 표방 실질적으로는 보수 성향
핵심이슈	노동법 개정·비정규직·사회보장 확대에 강경 입장	조합원 실리 중심 협상 타결 우선
KT 노조	KT 새노조 (공공운수노조)	KT 노동조합 (IT 사무서비스노련)

# 08

## 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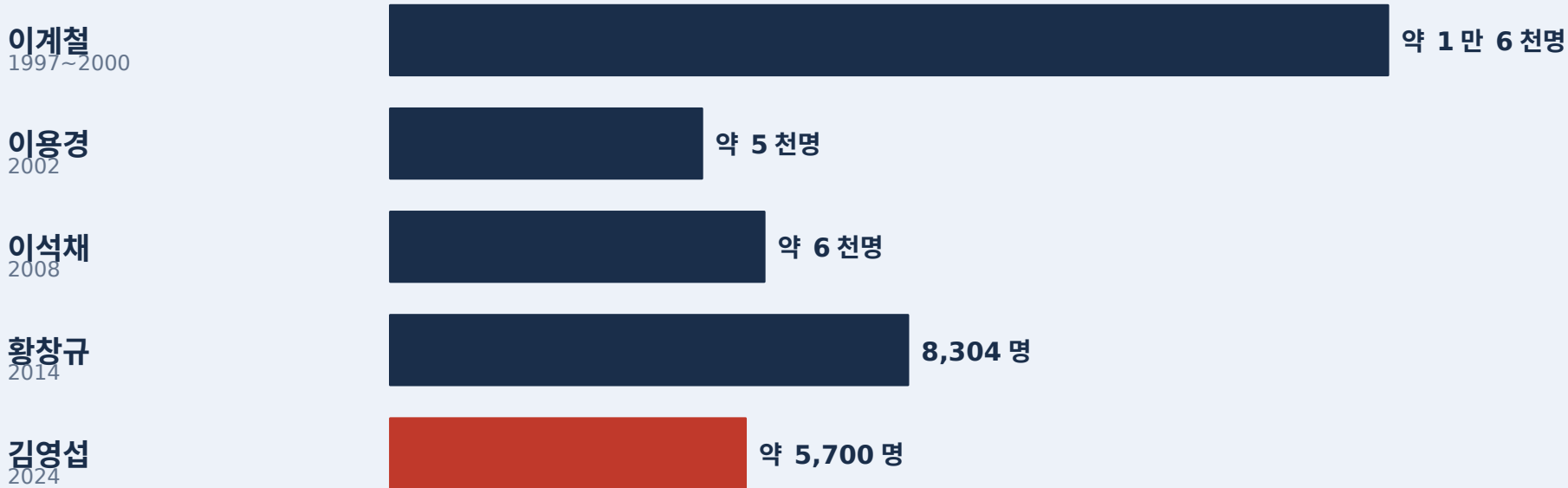
민주노총 이탈 후,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저항 없이 합의해 온 역사

# 08 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



# 08 KT 구조조정의 역사

회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대규모 인력 감축 — KT의 임금 총액은 20년 전과 같은 2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번 2024년 구조조정 (빨강)은 현금성 자산 1.7조 원·영업이익 2조 원대에도 강행 — KT 새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 회피용 구조조정'으로 비판

데이터 출처: 슬로우뉴스 「회장 바뀔 때마다 사람 잘라 이익 늘리기, 국가기간 통신사업자 KT의 비극」 (이정환, 2024.10.24) / KT 새노조 재구성

# 09

## 조합원 기본 행동강령

우리가 함께 지키는 노동조합 문화

# 09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 양성평등 실천

성별 · 나이 · 직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존중

동료 조합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 권위주의 · 위계적 문화를  
거부한다

## 혐오표현 금지

성별 · 나이 · 국적 · 장애에 따른 혐오 ·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민주적 참여

회의 · 투표 ·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조합의 결정을 함께 책임지고 실행한다

## 기밀 보호

교육 · 회의에서 공유된 개인정보와 조합  
내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연대와 단결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부당한  
처우에 함께 맞선다. 노동조합의 힘은  
나에게서 나온다

# 노동조합의 힘은

바로 나, 우리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 길라잡이

KT 새노조 (공공운수노조 KT 지부) | [humankt.org](http://humankt.org)